

의안번호	2215683
의 퇴 인	김상훈 의원
회 답 일	2026. 1. 30.
추계번호	25A7375
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의6(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관리 등)	-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검사·진단과는 별도로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교체·보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(제1항) -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교체·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(제2항) -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 중 수소 혼입 계획이 있는 배관이나 수소취성 우려가 큰 재질의 배관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음(제3항) -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기준,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기준과 방법, 교체·보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4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7조의6(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관리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안 제17조의6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사업자의 “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”의 교체·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면 추가

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이때 장기사용 도시기스배관이란, “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가스배관으로서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부 부식·수소취성 또는 파괴 우려가 있는 배관을 말함”(안 제2조제11호 신설)

□ 개정안은 장기사용 도시기스배관의 기준,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기준과 방법, 교체·보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지원 대상 배관, 그리고 국가 등의 지원 규모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- 참고로, 2024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도시기스 배관의 설치 현황을 설치연도별로 보면 20년 초과 배관은 전체 배관의 43.1%를 차지하고 있음

[표 1] 국내 도시기스 배관 설치 현황('24.12월 기준)

(단위: km)

합 계	설치연도별		
	20년 이하	21~30년	31년 이상
59,760 (100%)	33,990 (56.9%)	16,760 (28.0%)	9,010 (15.1%)

자료: 산업통상부

- 또한, 현재 산업통상부는 “도시기스공급배관사업(용자)”을 통해 도시기스 미공급 또는 소외지역에 도시기스 공급배관 건설과 사용자시설 설치비 용자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(2026년 예산 124억 4,200만원)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